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(지출의 절차)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각 실·과장은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,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
- 「지방계약법」 시행규칙 제33조(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)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.
 2.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3.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추정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숙박업소 안내도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견적서, 검수를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누락

사례2>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 지출 및 사무용품 등 구입 건에 대하여 물품 구매 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구매영수증만 첨부하거나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증빙서류를 누락

사례3>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구입 물품의 목록, 견적서, 영수증 등 구입 물품의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누락

사례4>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결제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고 미 첨부 시 반려 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거래명세서, 세부내역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였음에도 원인행위 결제(재무관)와 지급명령 결제(지출원)하여 지출

사례5> 구매한 물품에 대해 규격, 수량 등 확인(검수) 후 지출 시 검수 조서 등 증빙 서류를 누락

사례6> 사무관리비로 직원 명함 제작비를 집행하면서 산출기초조사서, 물품검수조서,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대가 지급 시 지급요령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, 정산서 제출 여부 등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